

<붙임2>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을 규정하여 생태축 보호·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 범위와 백두대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기준 및 자연보전시설 등의 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제17318호, 2020.5.26. 공포, 2020.11.2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다른 법률의 분리 제정에 따라 핵심구역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허용 및 부대시설의 종류에 전기설비를 추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생태축 보호·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정맥 산줄기를 규정
(안 제2조의2 신설)

- 1) 남한의 9개 정맥인 한북정맥, 낙동정맥, 한남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낙남정맥의 산줄기를 규정함.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추가 및 부대시설 종류에 전기설비 추가(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안 제8조제5항제2호)

-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측소”를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로 추가함.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추가

다.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범위를 규정 (안 제11조의7 신설)

- 1)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 범위를 “백두대간 사랑운동, 산림정화, 홍보활동, 불법행위 감시·신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등산로 및 입간판 정비” 등으로 규정함.

라.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규정 (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 1) 광역단위 : 둘 이상의 도 단위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국유림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구성·운영
- 2) 지역단위 : 하나의 도 단위 행정구역의 경우로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구성·운영

마.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계획 고시 (안 제14조 신설)

- 1) 설치계획에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면적,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사업예정지 도면을 반영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맥) 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는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1. 한북정맥
2. 낙동정맥
3. 한남금북정맥
4. 한남정맥
5. 금북정맥
6. 금남호남정맥
7. 금남정맥
8. 호남정맥
9. 낙남정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맥의 주요 경로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중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기상시설”을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보호·관리 활동 범위)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관리활동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백두대간 사랑운동, 산림정화, 홍보활동, 불법행위 감시·신고
2.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등산로 및 입간판 정비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관리 활동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중전의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중 “제13조”를 각각 “제15조”로 한다.

제12조(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1. 광역단위정책협의체 : 둘 이상의 도 단위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국유림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구성

2. 지역단위정책협의체 : 하나의 도 단위 행정구역의 경우로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구성

②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장은 산림청의 백두대간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백두대간 보전·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기관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백두대간 보호와 이용에 대한 갈등과 관련한 사항

2. 중대한 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와 관련한 사항

3. 백두대간 보호·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조정해야할 안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의 관련자 및 주민대표 등을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전협의 요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백두대간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4.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
5.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6.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0.11.27>

정맥의 주요 경로(제2조의2제2항 관련)

정맥의 명칭	정맥의 주요 경로
1. 한북정맥	강원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2. 낙동정맥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매봉산에서 운주산, 엄광산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물운대로 이어지는 산줄기
3. 한남금북정맥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속리산에서 보광산, 소속리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4. 한남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광교산, 가현산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5. 금북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백월산, 오서산을 거쳐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지령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6. 금남호남정맥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의 영취산에서 장안산, 마이산을 거쳐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7. 금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싸리재, 계룡산을 거쳐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의 부소산로 이어지는 산줄기
8. 호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내장산, 무등산을 거쳐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9. 낙남정맥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의 지리산에서 옥산, 불모산을 거쳐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의 분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조의2(정맥) 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는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1. <u>한북정맥</u> 2. <u>낙동정맥</u> 3. <u>한남금북정맥</u> 4. <u>한남정맥</u> 5. <u>금북정맥</u> 6. <u>금남호남정맥</u> 7. <u>금남정맥</u> 8. <u>호남정맥</u> 9. <u>낙남정맥</u>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맥의 주요 경로는 별표와 같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기준) <u>법</u> -----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
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
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
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1. 도로·철도·하천·궤도시
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
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
항 제10호에 따른 진입로, 현
장사무소 등 임시시설(작업장
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은 송전탑
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최소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
방시설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

-----.

1. -----

-----.

2. -----

3. 국가통신시설

4. 기상시설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 방지시설

② ~ ④ (생략)

⑤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신 설>

2. 「수도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3.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도

<신 설>

3. -----

4.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5.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3. -----

4. -----

제11조의7(보호·관리 활동 범위)

<신 설>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관리활동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백두대간 사랑운동, 산림정화, 홍보활동, 불법행위 감시·신고

2.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등산로 및 입간판 정비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관리 활동

제12조(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1. 광역단위정책협의체 : 둘 이상의 도 단위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국유림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구성

2. 지역단위정책협의체 : 하나의 도 단위 행정구역의 경우로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
림청장이 구성

②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
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장
은 산림청의 백두대간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제1항제
2호에 따른 위원장은 지방자치
단체 산림분야를 담당하는 국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소
속 공무원과 백두대간 보전·
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
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는 위원장이 소속기관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백두대간 보호와 이용에 대
한 갈등과 관련한 사항
2. 중대한 개발 행위에 대한 사
전협의와 관련한 사항

<신 설>

3. 백두대간 보호·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이 정한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조정해야 할
안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의 관련자 및 주민대표 등
을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조정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
는 사전협의 요청자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신 설>

제12조 (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

있으며, 백두대간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4.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
5.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6.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제15조 (권한의 위임) ① -----
----- 제15조 -----

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3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4호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5조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연 락 처	(042) 481 - 8814